## 심박기 거치술 급여기준 (고시 2016-151호)

## 심박기 거치술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

- 다 음 -

- 1. 굴기능 부전 (Sinus Node Dysfunction)
- 가. 증상을 동반한 서맥이나 증상을 동반한 동휴지가 각성상태에서 입증된 경우
- 나. 증상을 동반한 심박수변동 부전(chronotropic incompetence)이 있는 경우
- 다. 의학적 상태로 인하여 투여가 필요한 약물에 의해 증상을 동반한 서맥이 각성상태에서 입증된 경우
- 라. 서맥과 관련된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증상은 있지만 증상과 서맥과의 관련성이 검사에서 입증되지 않았을 때 각성상태에서 심박수가 40회/분 미만인 경우
- 마. 원인을 알 수 없는 실신 환자에서 임상전기생리학적검사시 유의한 동기능 이상이 발견되거나 유발된 경우
- 2. 방실차단 (Atrioventricular Block)
- 가. 3도 또는 2도 2형 방실차단
- 나. 각성상태에서 증상이 없는 심방세동에서 5초 이상의 무수축 심정지가 증명된 경우
- 다. 방실차단 부위와 관계 없이 서맥으로 인한 증상이 있는 2도 방실차단
- 라. 심근허혈 소견이 없이 운동 중 발생한 2도 또는 3도 방실차단
- 마. 긴(long) PR 간격을 보이는 1도 또는 2도 방실차단으로 방실 부조화로 인한 심박동기 증후군 이나 혈역학적 증상이 있는 경우
- 바. 무증상의 2도 방실차단에서 임상전기생리학적검사 결과 차단부위가 His 속 내부 또는 그 아래인 경우
- 3. 만성 2섬유속차단(Chronic Bifascicular Block)
- 가. 만성 2섬유속차단에서 각차단이 교대로 발생하는 경우
- 나. 만성 2섬유속차단에서 실신, 현기증의 원인이 임상전기생리학적검사를 포함한 진단적 검사로도 심실빈맥과 같은 다른 원인은 배제되고 방실 차단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
- 다. 만성 2섬유속차단에서 증상이 없더라도 임상전기생리학적검사에서 HV간격이 100ms 이상이거나, pacing에 의해 His속 아래 부분의 방실차단이 유도되는 경우.

- 4. 급성 심근경색과 관련된 방실차단 (AV Block in Acute Phase of Myocardial Infarction)
- 가. 급성 심근경색 이후 3도 방실차단이 지속되는 경우
- 나. 급성 심근경색 이후 각차단을 수반한 2도 2형 방실차단이 지속되는 경우
- 다. 급성 심근경색 이후 2도 2형 방실차단 또는 3도 방실차단이 일시적으로 발생하더라도 각차단이 새로 발생한 경우
- 5. 목동맥굴 과민증후군 (Hypersensitive carotid syndrome)
- 목동맥굴 압박을 하는 특정 상황에서 실신이 재발한 병력이 있고 목동맥굴 압박에 의해 3초 이상의 심실 무수축과 함께 실신이 유발된 경우
- 6. 긴 QT 증후군 (Long QT syndrome)
- QT 간격이 연장되었거나 또는 연장되지 않았더라도 심전도상 동휴지-의존성 지속성 심실빈맥이 발생한 경우
- 7. 소아, 청소년 및 선천성 심질환에서의 서맥성 부정맥
- 일반적인 사항은 성인 적용기준에 준하여 적용토록 함
- 가. 연령에 따른 심박수가 부족한 동서맥(age-inappropriate sinus bradycardia)으로 인한 증상이 있는 경우
- 나. 복잡 선천성 심기형에서 각성시 심박수가 40회/분 미만이거나 심실 휴지 기가 3초 이상인 경우
- 다. 복잡 선천성 심기형에서 동서맥 또는 이탈박동으로 인한 방실조화(AV synchrony) 소실에 의한 혈역학적 부전이 있는 경우
- 라. 선천성 3도 또는 고도 2도 방실차단인 1세 이하의 영아에서 각성시 심박수가 55회/분 미만인 경우
- 마. 선천성 3도 또는 고도 2도 방실차단이 동반된 선천성 심기형이 있는 1세 이하의 영아에서 각성시 심박수가 70회/분 미만인 경우
- 바. 무증상의 선천성 3도 방실차단이 있는 1세 이상 소아에서
  - (1) 각성상태시 심실 박동수가 50회/분 미만
  - (2) 심실 휴지기가 평상시 심박동수 주기의 2배 이상으로 발생한 경우
  - (3) 심실기능저하, QTc 연장, 복잡 심실 기외 수축, 넓은 심실 이탈 박동이 보이는 경우
- 사. 선천성 심질환과 동서맥이 있는 환자에서 심방내 재입성 기전 빈맥(intraatrial reentrant

tachycardia)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

아. 선천 심기형으로 수술 받은 환자에서 각차단을 동반한 일시적 완전 방실 차단을 보이는 경우

## 8. 원인 불명 실신

- 가. 40세 이상의 반복적이고 예상하기 어려운 반사성 무수축성 실신환자(reflex asystolic syncope)에서, 증상을 동반한 유의한 동휴지나 방실차단이 기록된 경우. 다만, 기립경사테이블검사 (Tilt Table Test)에서 유발된 경우는 제외함.
- 나. 실신의 병력이 있는 환자에서 증상과 상관없어도 6초 이상의 심실 휴지기가 발견된 경우
- 다. 각 차단이 있으며, 임상전기생리학적검사에서 HV 간격이 70ms 이상 또는 2도 이상의 방실차단이 증명된 경우
- 라. 원인이 불분명한 실신이 재발한 병력이 있고 목동맥굴 압박에 의해 6초 이상의 심실 휴지가 유발된 경우
- 9. 상기 1~8항의 적응증 이외 심박기 거치술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진료내역 및 담당의사의 소견서 등을 참조하여 사례별로 인정함